산업통상부공고 제2026-702호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7일

산업통상부장관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으로 핵심광물의 범위가 “광물”에서 “광물 및 그 광산물”로 확대됨에 따라 고시로 정하는 광산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핵심광물 지정계획」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핵심광물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핵심광물에 해당하는 광산물의 범위를 규정(제2조제3항 신설)

나. 「핵심광물 지정계획」에 따라 선정된 51종을 핵심광물로 지정(별표 1)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참조 : 광물자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광물자원팀
- 전자우편 : bjw1525@korea.kr
- 팩스 : 044-203-47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공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부 광물자원팀(전화 : 044-203-51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고시 제 호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산물”은 별표1에 따른 광물의 광산물로서, 해당 광물을 선광, 제련, 정련 및 물리·화학적으로 전환하여 얻은 물질을 말한다. 단, 이를 가공하여 제품의 소재·부품으로 만든 물질은 제외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핵심자원의 정의) ①·②	제2조(핵심자원의 정의)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산물”은 별표1에 따른 광물의 광산물로서, 해당 광물을 선광, 제련, 정련 및 물리·화학적으로 전환하여 얻은 물질을 말한다. 단, 이를 가공하여 제품의 소재·부품으로 만든 물질은 제외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별 지

[별표 1]

핵심광물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

리튬광, 니켈광, 코발트광, 망간광, 흑연, 희토류광, 니오비움광(니오븀), 동광(구리), 보크사이트(알루미늄에 한함), 규석·규사(규소에 한함), 마그네사이트(마그네슘에 한함), 몰리브덴광, 바나듐광, 백금광(백금, 팔라듐, 루테늄, 로듐, 이리듐에 한함), 주석광, 티탄철광(티타늄에 한함), 텅스텐광, 안티몬광(안티모니), 창연광(비스무스), 크롬철광(크롬에 한함), 연광, 아연광, 탄탈륨광, 지르코늄광, 갈륨, 인듐, 셀레늄, 스트론튬, 형석, 인광, 게르마늄